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10. 24(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5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도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36차, 제3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8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김대회 상임위원

- 옛날 속기록은 왜 나와 있지요?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뒤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예?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옛날 속기록은 왜 갖다 냈지요?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그것은 뒤에 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38차 회의의 '시청률 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인데 시청점유율 산정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각 매체별 시장 경쟁력을 파악해서 시장의 공정경쟁 상황을 정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상식적인 이야기 말고 시청점유율의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고 실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고시 이전에... 본 규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전반적으로 여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 매체별로 시청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제한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미디어다양성, 2010년 7월 22일에 통과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 이경제 위원장

- 미디어법...

○ 양문석 상임위원

- 예, 미디어법 종편 허가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미디어 산정기준, 독일식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특정 매체의 독점과점을 보기 위해 했던 것이 이 조사입니다. 그 조사에 있어서 점유율이 중요했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서 가중치를 줘서 계속 매년 그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상 10억~20억원 정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여론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그래서 종편이 도입될 때 종편이 새로 갖게 될 시청률과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문의 구독률을 합산하면 엄청난 여론의 독과점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30%를 넘지 못한다, 또는 25%를 넘지 못한다는, 미디어법 통과 직전에 그런 논쟁이 있어서 다양성을 위한 시청점유율 방법이 제시되어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36%로 저번에 나왔던데 그러면 30% 넘는 것은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안 됩니까? 종편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법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지금 2~3년밖에 안 됐지만 그 당시 30%, 25% 논쟁이 벌어지면서 제 자신이 그때 과연 30%, 25%까지 가느냐, 아마 15%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합산해서 8% 정도 조선일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과는 동떨어진, 예산이 계속해서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미디어법 이후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다가 작년, 재작년 조사 나오고 나서 의미부여를 다시 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청률 조사나 시청점유율 조사나 그 다음에 미디어 그룹의 시청률 조사, 시청점유율 조사는 기본적인 통계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조사를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국의 방송 미디어 상황의 기초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기초데이터가 이후에 각종 정책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미디어법 통과를 통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거기에 대한 여론의 과점 문제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 이전에 그런 기초통계조사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안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재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저도 동감이고,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용어도 제가 그때 제안해서 다양성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다양성 조사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연내로 우리가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시청률뿐 아니라 스마트폰, DMB 등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영향력지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의 목표는 사실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목표이고, 그러니까 조사할 때에 이것은 법적으로 그 부분은 해나가되, 사실상 시장성의 객관적 측정,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이것의 법적인 것도 충족하면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거나 시청점유율 조사가 그런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국감에서도 tvN의 '꽃보다 할배'를 화제 삼았습니다. CJ계통의 케이블 MSO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의 목표는 그러한 미디어다양성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통위원으로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참고가 되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영향력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의 시청점유율도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할 때 KBS, MBC, SBS 그 밑에 CJ,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경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런 조사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비로소 SBS 턱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SBS가 CJ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고, 조·중·동이 왜 그렇게 CJ를 혼내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특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그래프를 많은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현재의 판도를 금방 알 수 있어서 언론학자들 까지도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시청자 다양성 조사에 아주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4-1. 법원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견

○ 이경재 위원장

- 그리고 법원에서 2008년 제12차 회의의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차수의 회의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위원,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 표결 결과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왜 법원에서 이것을 요청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이 건은 KBS 정연주 前 사장 해임 관련 사항입니다. 해임 관련해서 정연주 前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쪽에 KBS 이사 추천부터 각종 논의사항에 대해 속기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속기록이 한 4건이 있습니다. 3건은 이미 제출을 했고, 이번에 유재천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또 추가로 요청해 와서 오늘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통상 법원이나 국회에서 비공개 속기록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의 전 단계에서 음영처리를 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알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음영처리가 어디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음영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지금 드린 것은 원본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언위원과 사무국 보고자의 성명, 표결을 음영 처리하기로 방금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회의 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음영 처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은 원본 그대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것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사람 이름만 음영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사람 이름과 표결 결과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2.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제 위원장

- 제38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 (2013-39-141 ~ 142)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외국자본의 출자 규정을 위반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의 소유자 KT&G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방송법령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방송법령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YTN 주식 총수의 19.95%를 보유한 KT&G의 주식 총수 중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KT&G가 외국자본으로 간주됨에 따라 YTN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YTN의 외국자본 비율이 KT&G 19.95%, Acadian Asset Management LLC 등 기타 외국인 주주가 0.21%로 총 20.16%를 점유하게 됩니다. KT&G는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 소유 주식 비율이 리자드에셋매니지먼트 엘엘씨 5.49%,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 5.49%, 기타 47.52%로 총 58.5%로 외국자본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YTN과 KT&G 공히 방송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위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기타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총 9인 중에 6인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해 왔으며, 2인은 사전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1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방송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YTN과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YTN의 주식을 소유한 기타 외국인 주주 9인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폐쇄 전에는 주식처분 사실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 폐쇄주주 명부를 확인한 후 조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YTN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처분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서 우선 '14년 2월 말까지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14년 2월 말까지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명령 사항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법은 법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위원회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내년 2월까지 주식매각 등을 통한 자체 조정으로 합법상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원안을 지지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시정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고 돈이 거래가 되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만약에 2월 말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재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사례는 시정명령을 수차례 더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한편은 곧바로 6개월간 이내에 있어서 영업정지나 허가기간 단축 그런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이 처음 얼마간 시정이 안 됐을 때 한 번 더 한다든지 한두 번 더 시정조치에 관한 행

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이미 과거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하나 질문사항인데 KT&G가 '12년 말 현재 확인했을 때 58.5%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50%를 넘었는지에 대한 트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98년도 담배인삼공사가 YTN에 들어오게 되고, 2002년에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됩니다. 그 과정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봤을 때 2004년 말 현재로서 결국은 KT&G가 50%의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됐고, 결과적으로 결국 YTN에 있어서도 외국인 자본 제한 규정을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이 꽤 됐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만 담배인삼공사도 그랬고, YTN도 그랬고. 지난 번에 중소 지방방송사들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제대로 숙지가 되고 주기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위반사항으로 보면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처분, 그 다음에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는 가벼운...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원안이 나온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 부분은 이 1건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구성·운영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올해 7~8월까지 방통위 내부, 그리고 관계부처에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16일까지 방송사업자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10월 2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방송평가 규칙 개선안에 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의 대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의 교체시기를 8월에서 4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밑에 마지막 참고표시를 보시면 매년 5월~6월에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11월 동안 방송평가 심의를 하는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2014년에 구성되는 제6기 방송평가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014년 8월 30일~2016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중 하나인 ‘시청자 사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당 제재에 따른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자 사과’는 4점을 감점하게 되는데 이 감점항목을 삭제하고, ‘시청자 사과’와 다른 제재조치의 병과 시의 감점처리방식을 ‘경고’와 다른 제재조치 병과 시의 감점처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박스에 보시면 ‘시청자 사과’에 대한 감점은 삭제하고, 이전에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를 병과하는

경우나 '시청자 사과와 프로그램 정정' 제재를 병과하는 경우에 6점을 감점하던 것을 '경고와 관계자 징계' 병과 시 또는 '경고와 프로그램 정정'시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사과',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 3개의 제재를 병과하는 경우 '경고'와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 3개를 병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방송편성 평가를 실질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와 종편PP 평가대상 포함으로 어린이방송이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가 실제 시청가능한 시간대에 편성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22시~07시까지 편성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외하여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척도 조정입니다. 장애인 방송편성은 법적 의무부과 이전인 '07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11년 방송법 개정과 장애인방송 고시 제정에 따라 구체적인 편성비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편성비율대로 평가척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평가 규칙상의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척도를 '장애인 편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의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법령 준수여부 평가 배점 조정입니다. 방통위가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금지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법 법령 준수 위반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적용 시점은 '15년에 평가하는 '14년도 방송실적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0월 말~12월 중까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 및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1>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상파를 평가하기 위한 배점기준인데, 이번에 아니고 내년도에 쓰일 기준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내년도 방송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평가규칙이 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세부적인 기준이 나중에 종편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되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청소년·어린이 시청 문제가 이번에 제기됐는데 시청이 적절하지 않은 22시, 또는 새벽 2~3시에 편성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어린이 시간 편성은 과거 지상파가 몇 개 안 됐을 때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특별히 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린이 전용프로그램들이 EBS를 비롯해서 많이 생겼고, 지상파 방송들이 무료로 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배정하고, 이것이 정치나 또는 다른 격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채널에 이런 것을 끼워 넣는 것이 오히려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노출빈도를 높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음에 그런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중에 편성 문제를 제기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사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요는 박스 밑에 보시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방통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통통신3사, 구글, 애플 등 총 109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허가심사 계획입니다. 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허가신청서 접수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학회·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9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허가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보호조치 계획을 평가해서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박스 밑에 네 번째 허가 여부 결정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신규 허가를 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허가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10월 말에서 11월 15일까지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허가 심사 11월, 그다음에 허가 심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결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유는 알뜰폰의 본인확인서비스 미제공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언론 보도, 그다음에 ‘13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과는 미래부로부터도 알뜰폰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협조요청이 지난 9월에 온바 있고, 저희가 알뜰폰 본인확인서비스 관련해서 현장 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들 관계자 회의를 지난 10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확인서비스 개요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작년 8월에 개정되면서 본인확인, 연령·성별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던 주민번호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대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아래 박스에 보시다시피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 아이핀을 사용하는 아이핀 발급 3사,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로 본인확인을 해 주는 이통통신 3사,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 주는 공인인증기관 5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재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현황입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 표시를 보시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은 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인력 8명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알뜰폰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는 알뜰폰을 통해 웹사이트 가입 시 본인확인이나 연령확인을 휴대폰 자기 번호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자기 이동전화번호를 가지고 바로 본인확인이나 연령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방안은 박스를 보시다시피 알뜰폰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인 이통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번호를 이동통신사에게 동의를 받아서 제공하면 이동통신사가 대신해서 알뜰폰 사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해 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가입자인데 알뜰폰 사업자에게 신규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서 제3자인 이동통신사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가입신청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는 기존가입자 때

문에 문제가 되는데,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화면 표시창에 띄워서 본인확인을 받을 당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협회와 이통사로부터 질의가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문서로 보고내용을 회신해 주는 형태로 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알뜰폰 사용자들이 이를 사용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본인확인서비스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치가 그것을 해소해 주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좀 더 빨리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알뜰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폰, 그러니까 자기 번호를 '나는 이것으로 해 주시오' 하고 입력하면 그 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OK를 받으면 다시 이 쪽으로 거쳐서 해 주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 하는 과정에 알뜰폰 사업자들 자체는 자기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가입신청서에도 명기하고 동의절차를 받겠습니다만 이통사의 경우에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나 더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화면 표시창을 띄워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이통사들과 협의가 됐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건 확인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1건 당 40원 정도 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수익이...

○ 김대희 상임위원

- 수수료가 간다면 이통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최근에 이통3사들의 독점적 구조를 깨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아주 값싸게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서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폐회 】